

#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3년 1월 2일

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

## 1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	채용등급	채용인원	계약기간	근무예정부서	직무내용
정책지원관	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	4명	2년	강북구의회 사무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·조사·분석 지원</li> <li>○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/li> <li>○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</li> <li>○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/li> <li>○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작성, 참석 지원</li> <li>○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</li> </ul>

※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

## 2. 법령 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 및 제27조(신규임용)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17조(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) 및 제21조의3(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
-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### 3. 응시 자격 요건

○ 공통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지역·성별 : 제한 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- 연 령 : 20세 이상

○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구 분	응시 자격 요건 (※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)
정책지원관 (일반임기제7급)	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</u> 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</u> 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</u> 이 있는 사람 <관련분야 실무경력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경력 인정범위: 국회, 지방의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연구소, 학회 등</li> <li>2) 관련분야: 법률자문, 법무행정, 공공행정 등</li> <li>3) 관련분야 연구, 조사, 분석, 입법지원 등의 실무경력자</li> </ol>

※ 관련분야 최종경력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
(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17조 제5항)

※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
(불분명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)

## 4.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

- 임용예정일 : 2023. 2월(예정)
- 임용기간 : 임용예정일로부터 2년(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)
- 보수(연봉) :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**하한액 책정을 원칙**으로 하되,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에 따라 최종 결정  
[임기제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(보수규정 제34조 관련)]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	비 고
7급(상당)	63,693천원	45,237천원	주40시간(09:00~18:00, 1일 8시간, 주 5일 근무)

※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## 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- 응시원서 접수
  - 접수기간 : 2023. 01. 13.(금) ~ 01. 17.(화) 09:00~18:00 [공휴일 및 점심시간(12:00~13:00)] 제외
  - 접 수 처 : 강북구의회 사무국 의정팀 [우]01036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89(수유동, 강북구의회)]
  - 접수방법 : 방문(본인 또는 가족) 또는 등기우편 접수 ⇨ 등기우편 접수자는 사전에 사무국으로 유선 연락바람
    - 팩스, 이메일, 택배, 퀵서비스 접수 허용하지 않음
    -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    - 본인 방문 시 신분증 지참, 가족방문 시 가족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 및 신분증 지참

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되 변경 불가
- ※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(7,000원)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
  - 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응시원서 날인
  - 단, 등기우편 접수 시 수입증지 수수료(7,000원)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·동봉 (대한민국 '정부수입인지' 사용불가)
- ※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24시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
  - 등기우편 접수 시 사전에 사무국(☎02-901-4514)으로 유선 연락바람

### ○ 시험일정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	면 접 시 험		면접시험 합격자 발표
	일 시	장 소	
2023. 01. 20.(금) 예정	2023. 01. 27.(금) 예정	강북구의회 내 (추후 통보)	2023. 01. 30.(월) 예정

- ※ 면접시험 공고 및 발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홈페이지(council.gangbuk.go.kr)에 게시
- 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**가. 1차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 : 개별통보 및 강북구의회 홈페이지 공고**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  - 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**나. 2차시험(면접시험) 합격자 : 개별통보 및 강북구의회 홈페이지 공고**

-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- 자질 및 발전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  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
**다. 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 및 강북구의회 홈페이지 공고**
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## 6. 제출서류

- 응시원서(별지 1호 서식) 1부
  - 응시수수료 :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7,000원  
(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응시원서 날인)
    - 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
- 이력서(별지 2호 서식) 1부
  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- 자기소개서(별지 3호 서식) 1부
- 직무수행 계획서(별지 4호 서식) 1부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5호 서식)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별지 6호 서식) 1부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(원본 또는 사본), 학위증명서 사본 1부(원본 또는 사본)
 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 또는 사본)
  -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
  - 근무기간(연·월·일), 직위(급)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, 발행기관 직인 포함), 민간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

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※ 공고일 이전의 서류의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) 내의 서류여야 함

## 7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응시자가 채용 서류 반환 요구 시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,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입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취업지원)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및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,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전형(적극적 심사에 한함) 및 면접전형에서 각각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10% 또는 5%를 가산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-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북구의회 사무국 의정팀(☎02-901-4514)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붙 임: 제출서류 서식 각 1부(별도 첨부). 끝.